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5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박승진,
박유진,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이상욱,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민규, 최재란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서울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해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약상대자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모두 명시함. (안 제6조제1항)
- 나.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3항)
- 다. 공사감독자에게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4항)

라.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가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토록 규정을 신설
함. (안 제6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를 “계약상대자(이하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한다)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에 의해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 ☐ 사업공사명 :
- ☐ 업체명(원도급자) :
(하도급자) :
- ☐ 장비상호 및 기종명 :

건설기계 소유자			임대료 청구내역			건설기계소유자 확인 (인)	비 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록번호	사용기간	장비사용료 금액 (원)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하도급자 포함) 청구 내역 및 건설기계(하도급자 포함) 사용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

□ 사업공사명 :

□ 업체명(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장비상호 및 기종명 :

건설기계 소유자			임대료 지급내역		건설기계소유자 확인(인)	비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성명	연락처	주소	임대기간	장비임대료 청구금액(원)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하도급자 포함) 지급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일일일

계약자 주 소:

상 호 :

대표자: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u>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u> 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 ----- ----- <u>계약상대자(이하 하도급자를 포함한다)</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한다)하며, 건설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u>

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
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
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
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신설>

⑤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
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
서에 의해 계약상대자로부터 건
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 ☐ 사업공사명 :
☐ 업체명(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장비상호 및 기종명 :

건설기계 소유자			임대료 청구내역		건설기계소유자 확인(인)	비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록 번호	사용기간 장비사용료 금액(원)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하도급자 포함) 청구 내역 및
건설기계(하도급자 포함) 사용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

- ☐ 사업공사명 :
☐ 업체명(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장비상호 및 기종명 :

건설기계 소유자			임대료 지급내역		건설기계소유자 확인(인)	비고 (원도급자, 하 도급자)
성명	연락처	주소	임대기간	장비임대료 청구금액(원)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하도급자 포함) 지
급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제3항에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끝이어 제4항에 공사감독자의 해당 확인서에 대한 점검의무 및 계약부서 담당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미지급분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5항에 공사감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적절 지급 확인의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는 **절차적 사안**¹⁾에 해당하여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절차규정에 의한 비용발생 요인 부재] 본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강화와 그에 수반되는 서류양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발생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